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93 발의연월일: 2023. 1. 10.

발 의 자:이용호·이 용·장동혁

이태규 • 김예지 • 박덕흠

정우택 • 박대출 • 엄태영

이인선 • 황보승희 • 양금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음.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 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 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용권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망"이라 한다)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 신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 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권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1조의2(이용권의 부정판매 금
	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
	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
	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
	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
	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웃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
	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38조(벌칙) ① (생 략)	제3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정
	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
	<u>으로</u> 반복·입력하는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한 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